

#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9월 12일 /김성조, 안병국, 이다영, 이재진, 전주형, 최해곤, 황찬규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9월 1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(2024. 9. 23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김성조 의원)

### 가. 제정사유

○ 「국민건강증진법」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, 아동·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제2항)
-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2)

### 다. 관련법령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
- 「유아교육법」
- 「영유아보육법」
- 「초·중등교육법」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, 아동·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#### ○ 종합검토 결과

-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포항시의 만 19세 이상 흡연인구는 72,520명 (17.3%)으로 추정되며, 청소년의 흡연율은 경북이 5.5%로 전국 4.2%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임.
- 안 제5조의제2항에 최근 시행된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6항을 반영하여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시설의 경계선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추가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의제3항 및 본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, 사후적 처벌 조치보다 금연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금연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으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포항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